

언론관계판례에 비추어 본 동향 분석

양삼승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부장

1. 서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비중과 그 사명의 중대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배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이 고귀한 희생을 무릅쓰고, 사명감에 넘치는 투쟁을 해왔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위와 같은 희생의 대가위에서 현재와 같은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였고, 또한 현재와 같은 민주사회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과정은 끊임없는 것이어서, 자유만을 강조하던 시대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자, 그 이후에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률의 제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 3347호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 언론기본법의 제정과정 및 그 규정들 중의 일부의 내용에 대하여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이를 빌미로 삼아 당시의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정부의 의사에 의하여 통제하고 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으므로 이는 폐지 내지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그 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지고,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위 언론기본법 그 자체는 최근에 이르러 폐지되면서 독소조항으로 여겨졌던 조문들도 함께 폐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언론기본법의 규정 중에서 언론의 탄압이라는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마련되었고, 따라서 언론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여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소위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조항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에 흡수되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언론관계의 판례를 분석하여, 언론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변화 또는 그 전망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위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판례들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여 보기로 한다.

II. 언론관계 판례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주로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마련되었던 언론기본법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이에 따라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문을 연 이래, 상당한 수의 중재신청이 중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그 중의 일부분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시행의 초기에 있어서는 위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그 신청건수도 많지 않았고,

더욱이 이를 재판하는 법원 및 관련된 여러 기관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 성질 내지는 본질을 잘못 이해하여 약간의 논의도 있었고, 실무처리상의 혼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위와 같이 언론기본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의 법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초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문을 연지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인 1982년 9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었다. 필자는 당시 우연하게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사무분담의 결과 위 판결을 함에 있어서 주심판사로서 관여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위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법원의 선례가 전혀 없는 관계로, 그 사건의 심리범위 (즉, 원문기사나 정정보도문의 내용의 진실 여부를 어느 범위까지 상세하게 법원이 심리할 것이냐), 입증책임의 분배, 이에 따르는 판결문 작성 내지는 이유기재의 방법, 신청인의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의게재를 명하는 판결 주문의 작성방법, 정정보도기사의 형식이나 이를 특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각별한 연구와 번민을 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창기로서 언론기관 측에서도, 위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고, 그 결과, 위 제도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어울려져서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인식과 이에 대한 반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를 심리하는 법원에 대한 불신감 역시 대단하여, 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로서도 극도의 부담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 내지는 직업윤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위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의 과정에 얹힌 뒷이야기들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먼 훗날 당시의 회고담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1982년 9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16 부는,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권제도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가장 효과적이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게 됨에 이른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82년 9월 3일 선고 82 카 18633 판결). 그리하여 위와 같이 최초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점차로 위 정정보도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 심리방법 및 이에 관한 이론 등이 정립되어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9년 2월 31일까지에는, 순수하게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판례로서는 31건의 판결이 대법원 등 각급법원에서 내려지게 되었다(위 31건의 판결 중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1심법원의 판결과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도 있어서 법원에서 다루어진 사안의 수는 이보다 조금 작게 될 것이다). 위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법원에서 내려진 31건의 판결 중에서,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2건이 있는 바(대법원 1986년 1월 28일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대법원 1986년 12월 23일 선고 86 다카 818 판결), 이 중에서도 1986년 1월 28일 선고 85 다카 1973 판결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내지는 본질에 관하여 종래, 법원의 실무 또는 언론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및 학자들 사이에서 간혹 문제로 되어오던 의문점(이는,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정정보도청구권리 그 「정정」보도라고 하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원문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독일 등의 소위 「반론권」 또는 「반박권」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문의 규정내용은 위 반박권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더라도, 법문상 명백히 「정정」보도청구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당연한

전제로서 원문기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소송의 실체에 있어서는 원문기사의 진실성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냐의 가장 본질적인 점에 관한 것이었다)에 대하여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그 의미는 실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은,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나아가 이러한 점에서 위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정」이라는 용어는 잘못 선택된 것으로서 마땅히 「반박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져 사용되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실시하고 있다. 필자는 위 조문의 제정 당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을 피력해왔었으나, 견해가 통일되지 못하고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없지 아니하였는 바, 위대법원의 판결이 명쾌한 결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 점에 관한 의문은 완전히 해결, 정리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의 실시내용에 관하여는 다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 대법원 판결 이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인식도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또한 법원의 실무처리방식도 점차 확립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31건의 판례가 형성되게 되었다. 위 정도의 판례로서는 아직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로 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카바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중요한 문제점들 및 정정보도문의 형식 등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나름의 틀을 잡아왔으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정정보도청구의 제도도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점차 그 내실을 기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III. 언론관계판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다음으로 위 정정보도청구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위 판례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있어서는 개개의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언론관계판례들의 커다란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판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를 만연히 판결의 선고일자 순서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하여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또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 관련하여, 필자는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무하던 당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취급을 전담하고 있는 합의 제 16 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바, 위 사건들을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필요성에 기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그 행사의 요건, 효과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조사, 검토한 바가 있었고, 위 검토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본 「언론중재」 잡지의 1982년 겨울호에 「정정보도청구권 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다. 물론 위 논문의 내용은 깊이 있는 학술적인 것이 아니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형편에서 실무상의 처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정리한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가급적 빠짐없이 언급하였고, 또한 그 서술의 체계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구성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이하에서 위 판례들의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그 논술의 편의 및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그 검토의 순서를 필자의 위 논문의 서술순서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의의 및 본질에 관한 판례

- (1) 정정보도청구권리라 함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 내지는 의견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간단히 본 바와 같이 위 정정보도청구권리라는 용어 중에 「정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위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서는 원래의 기사가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요건이고 따라서 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그 원문기사의 진실성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었던 것이다.
-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1986년 1월 28일 선고 85 다카 1973 판결은 「언론기본법 제 49 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더 이상 없도록 잘라서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위 대 법원 판결은 위 점에 관하여 종래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을 의식하여서인지, 위와 같은 명확한 실시에 그치지 아니하고, 덧붙여서 「이러한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리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실시하여 종래 위 권리에 대한 용어로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반론권」, 「반박권」, 「응답권」 등으로 사용하던 용어에 대한 우리나라 나름의 대안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이 위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위와 같은 실시를 하게 된 논리적 근거까지도 제시하여 첫째로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고, 둘째로 연출사의 입장에서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 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실시하여, 통상의 판결문에서와는 달리 상세하고, 친절한 논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위 점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 (3)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위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약 2년여 이전인 1983년 11월 17일 서울고등법 원은 82 나 4188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한 적이 있었다. 즉 위 사건의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변호사는 항소이유 중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기관이 무상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강요되어 그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정정보도사유에 대한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로서 「첫째, 기사의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거나, 둘째,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셋째로, 언론기관에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제도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실시하여 그 요건이 기존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리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 내지는 성질에 관하여 언급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으나, 그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반론권 내지는 반박권리라는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여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리라는 시각에서 실시하여 다소 그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요건에 관한 판례

(1)주체에 관한 요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년 11월 25일 선고 83카 22003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판결을 종래의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이 있어」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반론을 전개하고 이에 따라서 위 사건의 신청인인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는 「미국 오크라호마주에 있는 국제오순절성결회의 승인 하에 국제오순절성결회와 교리를 같이 하는 서울시내신림중앙교회 등 11개 교회의 담임목사 등이 조직한 종교단체로서 단일한 사회적 활동체라고 볼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체의 장과 그 단체 자체와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노회의 노회장으로서 그 대표인 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회 그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년 11월 30일 선고 84카 35089 정정보도사건의 판결). 그리고 신청인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광주시 북구 건축과 근무 공무원 임모씨」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P 노회」 또는 「K 목사」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나아가서는 「성명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라도,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또는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진다」거나(서울민사지방법원 1982년 9월 3일 선고 82카 18633 판결 및 같은 법원

1984년 11월 30일 선고 84카 34089 판결) 또는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6년 9월 26일 선고 86카 28755 판결)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정정보도의 강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객체(원문기사)에 관한 판례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객체 즉 대상은 정기간행물 등의 「사실적 주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가능한 결과로 어떤 회의에서 보고 느낀 바를 「논평 내지는 비평하기 위하여 쓴 기고문」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3년 5월 24일 선고 83카 7933 판결). 그러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 한 그 형식이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그 보도의 형식을 불문한다」고 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회원이 피신청인에 투고한 글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정정보도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7년 12월 11일 선고 87카 40175 판결). 나아가, 기사가 다른 기관의 공문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신문을 통해 공표된 이상 이는 동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서울민사지방법원 1983년 8월 19일 선고 83카 9145 판결),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1986년 1월 28일 선고 85다카 1973 판결), 기사의 내용이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표된 이상 신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서울민사지방법원 1989년 7월 7일 선고 89카 11518 판결), 마찬가지로 「소위 싸늘이 발언에 대한 기사는 전북도민의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미 그 신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년 12월 29일 선고 89카 52256 판결). 한편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종래 이론상 다툼이 있어 왔고, 확립된 견해가 없었는데, 이 점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년 11월 30일 선고 84카 34374 판결은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광고 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정하고 있다(다만 이점에 관한 다른 견해들 및 철자의 견해에 대하여는 위 언론중재 1982년 겨울호 졸고 16면 참조).

(3) 「피해를 입었을 것」에 관한 판례

정정보도청구권리 발생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이 요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것을 가리키며 (위 대법원 1986 년 1 월 28 일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따라서 어떤 기사가 소정의 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 관한 것이고, 신청인인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점에서 이유가 없게 되고(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년 8 월 18 일 선고 88 카 62228 판결), 학교에 관한 보도로 학교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교장의 직위에 있었어야 하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년 7 월 27 일 선고 85 카 2057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86 년 2 월 25 일 선고 85 나 3140 판결), 또한 신청인이 쓴 원고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변경·첨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위 잡지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공표된 내용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년 8 월 26 일 선고 83 카 17754 판결).

(4) 「정당한 이익」에 관한 판례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요건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중요한 요건으로서,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판결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보도된 사건의 주요내용이 정확하게 보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년 7 월 13 일 선고 84 카 1726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1986 년 7 월 14 일 선고 85 나 2457 판결). 한편 대법원 1986 년 12 월 23 일 선고 86 다카 818 판결은 위 정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을 좀더 명확히 제시하여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기사의 내용 중 「시간강사를 평교사로 하고, 그들이 사회정화위원회에 간 사실을 학교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진정한 뒤에 해임된 것으로 하였다거나, 그 농성기간을 몇 일 달리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이 북한을 방문한 후 귀국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뒤에 현실로 귀국함으로써 위 보도의 잘못이 증명되었더라도 정정보도의 청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년 9 월 22 일 선고 89 카 28545 판결), 또한 어떤 기사가 잘못 보도된 추 신문사에서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도, 그 정정보도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역시 그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년 12 월 29 일 선고 89 카 46152 판결).

4.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관한 판례

원문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지만,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취지상,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는 정정보도 신청인이 아닌 언론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법원으로서 원문기사에 대하여는 그 진실성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단지 그 공표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만을 확정하고, 그 이후 언론사측에서 정정보도문의 허위성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 점을 심리하되, 위 심리에 있어서도, 위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서의 입증과는 달리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독일의 실무 때와 같이 당해 재판기일에 인증이 아닌 물증의 방식으로 허위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는 등의 극히 제한적인 방법 만으로의 심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판결들은 그 작성내지는 구성의 방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문기사의 공표사실만을 확정하고 바로 이로써 정정보도의 청구권리 발생하였음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야 정정보도문의 진실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2년 11월 4일 선고, 82카2745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년 11월 7일 선고 82나4188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년 5월 25일 선고 84카1598 판결, 같은 법원 1989년 1월 13일 선고 88카3928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년 7월 12일 선고 89나7209 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년 11월 3일 선고 88카1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정보도가 청구된 사건 중에서 드문 예로서 춘천지방법원 1983년 2월 9일 선고 82카768 판결은 그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정 82타20095 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서울의 유수한 일간지의 발행인이었는 바, 그 명령된 정정보도의 위치 및 크기가 위 신문의 「제 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단 부분에 3단 8.5센티미터」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라고 하면서, 위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완료시까지 하루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원의 1984년 1월 12일자 결정 83타20훈9 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종교단체에서 발간하는 지명도가 낮은 신문이었던 바, 위 신문의 「제 1면의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루 금 5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있다. 위 2가지의 결정례는 앞으로의 실무에 있어서 간접강제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 등의 지명도, 발행부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참고적으로 그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어야 할 위치 및 그 크기에, 광고를 게재하였을 경우의 광고료의 액수 등까지도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수액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에 정정보도청구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에서 내려진 건의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위 제도가 도입된 후 초기의 수년 동안의 위 제도의 본질 내지는 그 입법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가장 중요한 점에 관한 실무의 태도에도 확실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특히 앞에서 본 1986년 1월 28일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점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논쟁의 소지는 더 이상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커다란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법원의 실무에 있어서 좀더 개선되어야 하고, 각별히 검토되어야 할 점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가의 점에 대한 심리태도 내지는 방법에 대한 점이다.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본질상, 위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통상의 민사사건에서의 입증과는 분명히 달라서, 간이하고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서만 그 입증이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무는 그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너무나도 상세한 심리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위 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을 몰각시켜,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위 제도의 시행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기간 경과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언론사측에서도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위 제도의 활성화는 결코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불리한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과 생활 및 호흡을 함께 하는 언론으로서 자리잡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언론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성씨만 보도해도 독자가 식별 가능하면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82 카 18633 정정보도).
2. 보도된 기사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신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서울민사지방법원 82 카 27454 정정보도).
3. 정정보도문 게재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82 타 20095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4.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이며, 정정보도청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82 카 768 정정보도게재).
5. 사실적 주장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기각(서울민사지방법원 83 카 7933 정정보도).
6. 타기관의 공문을 기사화했더라도 공표한 신문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83 카 9145 정정보도).
7. 원정을 수정·삭제해 게재한 경우는 정정보도청구권리 인정되지 않는다(서울민사지방법원 83 카 17754 정정보도).
8. 보도된 기사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신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서울고등법원 82 나 4188 정정보도).
9.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83 카 22003 정정보도).
10. 정정보도문게재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83 타 20389).

11.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서울민사지방법원 84 카 1598, 서울고등법원 84 나 2524, 대법원 85 다카 1973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12. 사건명과 청구취지가 다른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보도했다면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84 카 17261, 서울고등법원 84 나 3255 정정보도).
13. 광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84 카 34374 정정보도).
14. 광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84 카 34375 정정보도).
15. 단체의 장인 개인에 관계된 보도의 정정보도청구는 단체의 명의로 할 수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84 카 35089 정정보도).
16. 학교에 관한 보도로 학교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교장의 직위에 있었어야 한다(서울민사지법 85 카 20576 정정보도).
17. 신청인이 사건당시 복지중 · 고등학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사건보도에 의해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서울고등법원 85 나 3140 정정보도).
18. 청구취지 · 변경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해를 입었고 볼 수 없어(서울고등법원 85 나 2457 정정보도).
19. 임의로 조작된 수기를 가명으로 보도했더라도 인적사항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독자들에게 신청인이 쓴 것처럼 오인케 했으므로 정정보도를 하라(서울민사지방법원 86 카 28755 정정보도게재).
20.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해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86 다카 818 정정보도).
21. 기자가 조작한 수기를 가명으로 보도했더라도 특정인의 인적 사항과 일치하면 명예훼손이 되므로 정정보도하라(서울고등법원 86 나 4096 정정보도게재).
22. 일반기사형식의 보도이든, 독자투고형식의 보도이든 그 형식을 불문하고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서울민사지방법원 87 카 40175 정정보도게재).
23. 게재된 기사 중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진실이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서울민사지방법원 88 카 39283 정정보도게재).
24.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표된 이상 신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89 카 11518 정정보도게재).
25.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서울고등법원 89 나 7209 정정보도게재).
26.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신청인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88 카 62228 정정보도게재).
27. 신청인이 방북 후 귀국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89 카 28545 정정보도게재).

28. 언론사가 오보를 인정 「고침」 또는 속보형식의 기사를 통해 해명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하므로 다시 완벽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서울민사지방법원 89 카 46152 정정보도게재).

29. 신청인이 노점단속을 위해 단속원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춘천지방법원 88 카 1616 정정보도게재).

30. 분쟁과정을 보도하면서 한쪽의 주장만을 기사화하였으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 카 5999 정정보도게재).

31. 기사 속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언행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89 카 52256 정정보도게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법학박사). 독일괴팅겐대학 연수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저술: 「가정적 인과관계를」 외 다수

☐ 현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 헌법연구부장